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5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김장겸 · 박충권 · 이양수
고동진 · 강대식 · 김승수
추경호 · 최은석 · 조지연
서천호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4.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패조 사)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패조 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u>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매</u> <u>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u> <u>하여야 한다.</u> 1. <u>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u> <u>성명, 상호 · 명칭, 주된 사무</u> <u>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u> 2. <u>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u> <u>및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u> 3. <u>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u> <u>내역, 이용자 수, 거래 건수,</u> <u>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u> <u>공 현황</u> 4. <u>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u> <u>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u> <u>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